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5 선고 2021가단5338300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송명근

피 고 1. B

2. C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4. 5.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0,778,987원과 이에 대하여 2021. 4. 20.부터 2021. 12. 23.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나. 피고 C는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48,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사 이문세

별지